

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

의안번호	31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·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2조)
- 나. 위촉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위촉기간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- 마.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바. 간사에 관한 규정(안 제9조)
- 사.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특별한 이의신청사항 없음
- 마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군수·기획감사실장·자치행정과장·환경복지과장·임업경영과장·건설과장·지역도시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제3조(위촉) ① 위촉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②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4조(위촉기간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내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

2.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참석을 기피하는 행위

제5조(실무위원회)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5.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,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.

제10조(의견청취등)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록)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위 촉 장

성명 :

직위 :

주소 :

귀하를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
의하여 200 . . . 부터 200 . . . 까지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
위원으로 위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 년 월 일

평 창 군 수

□ 관계법령발췌

○ 관계법령 :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

민간 투자 법	민간투자법시행령
제2조(정의) <p>1. "사회간접자본시설"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,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아.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.</p>	
제4조(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) <p>1.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</p>	
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	제4조(심의위원회 운영) <p>⑨ 법 제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</p>
제9조(민간부문의 사업제안) <p>①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.</p>	제7조(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) <p>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</p>

으로 추진할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,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의 부합여부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센터의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.

⑥ 민간투자지원센터의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안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에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 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